단국대학교

2022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주요사항

본 안내서는 단국대학교 2022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되었습니다. 대교협의 기본계획승인여부 및 대학교육편제 또는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을 포함한 주요사항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전형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**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
DKU 단국대학교 DANKOOK UNIVERSITY

● 2021학년도 이후 주요 변경사항

구분		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재외국민	자격구분	• 영주교포 •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•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• 현지회사 근무자 자녀 • 자영업자 자녀 •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•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•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	해외근무자(해외 근무/사업/영업)의 자녀
	학생 이수기간	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포함 중·고교 과정 연속 2년(비연속은 통산 3년) 이상	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포함 중·고교 과정 3년 이상
	체류기간	• 학생 : 학생 이수 기간 • 부모 : 학생 이수 기간의 1/2 이상	•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/4 이상 • 부모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/4 이상
	해외근무자 재직기간	역년으로 연속 2년(비연속은 통산 3년) 이상의 해외 근무/사업/영업	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의 해외 근무/사업/영업
전교육과정 이수자, 북한이탈주민	전형방법	면접 100%	필기고사 100%

01 전형일정(예정)

구분		일정	비고
원서접수		2021. 7. 7(수) 10:00 ~ 9(금) 17:00	• 100% 인터넷 접수
필기고사		**2021. 7. 15(목) 10:00**	
1단계 합격자 발표		2021. 7. 20(화) 18:00	• 죽전 : 모집단위별 4배수 • 천안 : 모집계열별 3배수
서류제출기간		2021. 7. 21(수) ~ 23(금) <09:00~17:00>	• 1단계 합격자, 전교육과정이수자, 북한이탈주민 서류제출 • 등기우편은 7. 23(금) 우편소인까지 인정함
최초합격	발표	2021. 9. 3(금) 10:00	• 최초합격자 및 1~2차 충원합격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발표함 • 3차 충원합격자부터는 전화로 개별통보한 후 홈페이지에 공지함
	문서등록	2021. 12. 17(금) ~ 20(월)	
충원합격	발표 마감	2021. 12. 27(월) 21:00까지	
	문서등록 마감	2021. 12. 28(화) 까지	

※ 상기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함

02 모집인원

1. 죽전캠퍼스

계열	대학	모집단위		모집인원	
				재외국민	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
인문	문과	국어국문학과★		3	모집인원 제한없음
		사학과★		2	
		철학과		2	
		영미인문학과		3	
	법과	법학과★		3	
	사회과학	정치외교학과		2	
		행정학과★		3	
		도시계획·부동산학부		2	
		커뮤니케이션학부		5	
		상담학과		3	
	경영경제	경제학과★		3	
		무역학과★		3	
		경영학부★		5	
자연	공과	전자전기공학부★		5	
		고분자 시스템공학부	고분자공학전공	3	
			파이버융합소재공학전공★	3	
		토목환경공학과★		2	
		기계공학과★		4	
		화학공학과★		4	
		건축학부	건축학전공(5년제)	3	
			건축공학전공★	2	
	SW융합	소프트웨어학과★		5	
		컴퓨터공학과		3	
		정보통계학과		3	
		산업보안학과		3	
모집인원 계				79	-

※ 2022학년도 대학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

※ ★는 비사범계열 학부(과)의 교직과정 설치 모집단위이며, 2022학년도에는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
(단, 외국인학생은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없음)

2. 천안캠퍼스

계열	대학	모집단위		모집인원		
				재외국민		비제한
				최대모집 가능인원	계열별 모집인원	전교육과정이수자 북한이탈주민
인문	외국어	아시아중동학부	중국학전공★	21	4	모집인원 제한없음
			일본학전공★			
			몽골학전공			
			중동학전공			
			베트남학전공			
		유럽중남미학부	독일학전공★	13		
			프랑스학전공★			
			스페인중남미학전공★			
			러시아학전공★			
			포르투갈브라질학전공			
		영어과★		6		
		글로벌한국어과		1		
	공공·보건과학	공공정책학과★		4		
		사회복지학과		5		
		환경자원경제학과		6		
		보건행정학과		4		
		공공정책학과(야)		1	1	
자연	과학기술	수학과★		5	4	
		물리학과★		4		
		화학과★		6		
		식품영양학과★		5		
		생명과학부	생명과학전공★	13		
			미생물학전공			
		신소재공학과★		5		
		식품공학과★		6		
		에너지공학과		8		
		경영공학과		5		
	생명공학	생명자원학부	식량생명공학전공★	10		
			동물자원학전공★			
		환경원예조경학부	환경원예학전공	10		
			녹지조경학전공			
		의생명공학부	의생명공학전공	4		
		제약공학과		4		
	공공·보건과학	심리치료학과		4		
	간호	간호학과★				2

<table>
<tr><th rowspan="3">계열</th><th rowspan="3">대학</th><th rowspan="3" colspan="2">모집단위</th><th colspan="3">모집인원</th></tr>
<tr><th colspan="2">재외국민</th><th>비제한</th></tr>
<tr><th>최대모집 가능인원</th><th>계열별 모집인원</th><th>전교육과정이수자
북한이탈주민</th></tr>
<tr><td rowspan="14">예능</td><td rowspan="14">예술</td><td rowspan="4">미술학부</td><td>공예(금속・섬유)전공</td><td rowspan="4">13</td><td rowspan="17">4</td><td rowspan="17">모집인원
제한없음</td></tr>
<tr><td>동양화전공</td></tr>
<tr><td>서양화전공</td></tr>
<tr><td>조소전공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문예창작과</td><td>5</td></tr>
<tr><td rowspan="8">뉴뮤직과</td><td>사운드엔지니어</td><td rowspan="8">5</td></tr>
<tr><td>뮤직테크놀러지&
컴퓨터음악작곡</td></tr>
<tr><td>작곡</td></tr>
<tr><td>재즈피아노</td></tr>
<tr><td>재즈베이스</td></tr>
<tr><td>재즈드럼</td></tr>
<tr><td>재즈기타/관현악</td></tr>
<tr><td>싱어송라이터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체육</td><td rowspan="3">스포츠
과학</td><td colspan="2">생활체육학과</td><td>3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스포츠경영학과</td><td>4</td></tr>
<tr><td>국제스포츠
학부</td><td>운동처방재활전공</td><td>9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모집인원 계</td><td colspan="2">13</td><td>-</td></tr>
</table>

※ 재외국민은 모집단위별 최대모집 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계열별 입학성적 총점순으로 선발함

※ 2022학년도 대학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

※ *는 비사범계열 학부(과)의 교직과정 설치 모집단위이며, 2022학년도에는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
(단, 외국인학생은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없음)

03 전형방법

지원구분	선발모형	전형요소별 반영비율(%)		
		필기고사	서류심사	계
• 재외국민 (해외근무자의 자녀)	1단계 (4배수, 천안 3배수)	100		100
	2단계	100 (1단계 성적)	P/F	100
• 전교육과정 이수자 • 북한이탈주민	일괄합산	100	P/F	100

04 필기고사

캠퍼스	계열	과목별 반영비율(%)			고사시간	출제방식
		국어	영어	수학		
죽전	인문	40	60		60분	객관식(5지선다형) ※ OMR카드 사용
	자연		40	60		
천안	인문 예·체능	40	60			
	자연		60	40		

05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

1. 지원자격

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국내외 정규 초·중등학교에서 우리나라 학제(12년, 24학기)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'가'항 자격구분별 자격요건 및 '나'항 자격구분별 해외 재학·근무·체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
※ 국내외 검정고시, 홈스쿨링,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 방법은 인정하지 않음(단,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)

가. 자격구분별 자격요건

자격구분	자격요건
재외국민 (해외근무자의 자녀)	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/사업/영업하는 기간 동안,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(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)을 포함하여 중·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※ 해외근무자 : 해외근무 공무원, 상사직원, 외국정부·국제기구 근무자, 현지 취업자, 자영업자 등 ※ 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는 해외근무활동에 대한 세금 납부실적이 있어야 함

자격구분	자격요건
전교육과정 이수자	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(12년)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재외국민, 외국인,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※ 외국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초·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초·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 없이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지원 가능함 ※ 인문·자연계열 : TOPIK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지원 가능 ※ 예·체능계열 : TOPIK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지원 가능 ※ 해당국 정부지원 장학생, 자매결연대학 총(학)장 추천자는 TOPIK 1급 이상 자격 소지자 지원 가능
북한이탈주민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

나. 자격구분별 해외 재학 · 근무 · 체류 인정기준

자격구분	해외 재학·근무·체류 최소 인정기간				
	학생		해외근무자		배우자
	재학	체류	근무	체류	체류
• 재외국민 (해외근무자의 자녀)	고교 1개 학년 포함 중·고교 과정 3년	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마다 3/4 이상	3년 (1,095일)	학생의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마다 2/3 이상	
• 전교육과정 이수자	초·중·고 해외 전 교육과정 이수				
• 북한이탈주민	제한 없음				

1) 재외국민(해외근무자의 자녀)

- 해외 근무기간 : 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의 해외 근무/사업/영업
- 해외 재학기간
  - 학기 개시일 부터 재학한 경우 :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(약365일)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. (단,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)
  - 학기 중간에 편입한 경우 :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(약365일)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
- 해외 체류기간
  - 학기 개시일 부터 재학한 경우 :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(약365일)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은 3/4이상,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/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 하여야 함
  - 학기 중간에 편입한 경우 :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(365일)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/4 이상을,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/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 하여야 함

※ 학생의 재학기간은 해외근무자의 해외 근무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
※ 부모의 이혼 시 해외근무자는 반드시 친권자여야 함
※ 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 중 부모가 이혼한 경우, 이혼일자 전까지는 부모와 지원자 모두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, 이혼일자 이후에는 학생과 친권자(해외근무자)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됨

2) 전 교육과정 이수자

-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·중·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
- 방학,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는 인정함
-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 미만이라도 인정함
-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

학년제	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	비고
10학년 이하	미인정	단, 학년제로 인하여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(해당국 학년제 총 이수 연수와 12년간의 차이 연수)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
11학년제	초·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※ 단,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·중등 과정을 이수하여야 인정	
12학년제		
13학년 이상	10학년~12학년 또는 11학년~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	

2. 지원자격 심사 기준

가.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는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대학에서 판단함

나. 우리나라 학제(12년, 24학기)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, 학제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(6개월)에 한하여 인정함(총 23학기, 11년 6개월 이상 충족)

다.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·중·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(단, 전·편입학 시 월반은 불인정)

라. 동일 학년(학기)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

※ 단,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(복수 발생 인정)

-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
-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

마. 부모의 해외 근무·체류기간은 학생의 해외 중·고교 재학기간(해외재학 인정기간) 동안 근무 및 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

바. 지원자격 검토 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, 해외근무자의 근무, 학생 및 부모의 체류, 학생의 재학 형태 등이 부적합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

사. 코로나-19로 인한 불가피한 휴교 및 휴업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지원자격기간 인정여부를 결정함

아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조

06 제출서류

지원구분	제출서류
재외국민 (해외근무자의 자녀)	① **지원자 종합기록표** [1단계 합격자 발표 이후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입력 후 출력 제출] ② **학력조회동의서** [재학한 외국소재 중·고교는 모두 제출, 중·고교과정이 통합된 학교는 1부만 제출] ※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제출 생략 ③ **고교 졸업(예정)증명서** ④ **초·중·고교 성적증명서** [국내학교 및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] ⑤ **초·중·고교 재학(사실)증명서** [학년, 입학(전입)일과 졸업(전출)일 명시] ※ 성적증명서(생활기록부)에 재학기간이 명시된 경우 제출 생략 ⑥ **지원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** [부모의 이혼, 사망, 본인 입양 등의 경우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] ⑦ **출입국사실증명서** [지원자, 부모] ⑧ **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** [지원자, 부모] ⑨ **여권사본** [지원자, 부모] ⑩ **재외국민등록부등본** [지원자, 부모] ⑪ **제3국 수학 사유서**[대학 소정양식] **및 관련 증빙서류** [해당자에 한함] **[해외 파견 재직자,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]** ⑫ **해외근무자 재직증명서** [소속부서, 직위, 근무국가, 해외 근무기간 명시] ⑬ **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** ⑭ **재직회사 법인세 납부이력** [회사명 명시, 지원자격 기간 내 납부내역 모두 제출] **[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]** ⑫ **해외 영업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** ⑬ **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(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)** [사업체명 명시, 지원자격 기간 내 납부내역 모두 제출]

지원구분	제출서류
전교육과정 이수자 (재외국민, 외국인, 결혼이주민)	① **지원자 종합기록표** [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입력 후 출력 제출] ② **학력조회동의서** [재학한 외국소재 중·고교는 모두 제출, 중·고교과정이 통합된 학교는 1부만 제출] ※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제출 생략 ③ **고교 졸업(예정)증명서** ④ **초·중·고교 성적증명서** [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] ⑤ **초·중·고교 재학(사실)증명서** [학년, 입학(전입)일과 졸업(전출)일 명시] ※ 성적증명서(생활기록부)에 재학기간이 명시된 경우 제출생략 ⑥ **출입국사실증명서** [지원자] ⑦ **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** [지원자] ⑧ **TOPIK 인증서** **[재외국민 추가서류]** ⑨ **재외국민등록부등본** [지원자] **[외국인 추가서류]** ⑨ **외국시민권 및 여권사본** [외국시민권은 외국국적 취득일자 포함] ⑩ **외국인등록증** [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] ⑪ **지원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** [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 발행 증명서] ⑫ **재정보증서** [대학 소정양식] 및 **국내외 은행잔고증명서** [USD 10,000이상, 본인 또는 부모 명의] ※ 내국인(한국)이 보증인인 경우 국내외 은행잔고증명서 대신 **보증인의 재산세 납세증명서** 제출 ⑬ **장학금 지급확인서** [해당국 정부지원 장학생에 한함] ⑭ **자매결연대학 총(학)장 추천서** [자매결연대학 총(학)장 추천자에 한함] **[결혼이주민 추가서류]** ⑨ **국적취득사실증명서** [지원자] ⑩ **혼인관계증명서** [지원자] ⑪ **신분증 사본** [지원자]
북한이탈주민	① **지원자 종합기록표** [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입력 후 출력 제출] ② **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** [지자체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담당관 발급] ③ **학력인정증명서** [각 시·도교육청 발급] ※ 국내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는 학교생활기록부, 검정고시출신자는 합격증명서 제출

※ 지원자격 검증을 위하여 제출서류를 추가할 수 있음